

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154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7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박지원 · 민홍철  
이수진 · 서미화 · 서영석  
민병덕 · 김한규 · 박희승  
염태영 의원(10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,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등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,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, 작업복·유니폼 등에 지급한 비용 등 근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%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제공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95조의3 신설).

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5조의3(근로 소요경비에 대한 세액공제)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)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근로 소요경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근로 소요경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.

1.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2. 구직을 위하여 취업알선 업체·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3. 작업복 등 근무 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피복 및 보호장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
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로 소요경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9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   설&gt;</u> | <p><u>제95조의3(근로 소요경비에 대한 세액공제)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)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근로 소요경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근로 소요경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</u></li> <li><u>2. 구직을 위하여 취업알선 업체·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</u></li> <li><u>3. 작업복 등 근무 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피복 및 보호장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</u></li> </ol> |

하는 비용

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